

〈참고자료1〉

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관련 대학정보공시 지침 교원확보율 관련사항

겸임교원	초빙교원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조 제1호와 대학설립·운영규정 제6조 제4항 및 대학설립·운영규정시행규칙 제9조에 의해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교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조 제4호와 대학설립·운영규정 제6조 제4항에 의해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교원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'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'에 의한 교원의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교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학에서의 교수 및 연구내용이 원소속(본직)기관의 직무내용과 유사한 교원 - 원소속(본직)기관에서 정규직원*으로 상시(유사경력 3년이상)근무하고 있는 현직자(단, 전일근무를 하는 겸임교원은 원소속(본직)기관의 휴직자도 포함 가능) * 정규직원은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의한 '기간제근로자'와 '단시간근로자'가 아닌 직원을 의미 - 근무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계약된 교원 - 담당 과목이 겸임교원 제도 도입 취지에 따라 순수 학술이론 과목이 아닌 실무·실험·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 실무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목을 담당하기 위하여 임용된 교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'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'에 의한 교원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교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근무기간이 1년 이상으로 계약된 교원 - 매월 정액으로 보수를 지급 받는 교원 - 계약서 또는 고용조건에 퇴직금 지급이 명시되어 있는 교원 - 해당학기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대학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교원
<p>※ 인정 제외대상 교원 (기타 비전임교원으로 분류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겸임교원의 조건을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않은 교원 ② 강의를 담당하지 않는 교원 ③ 본직기관의 직무내용과 담당과목이 부합되지 아니한 자(순수 학술이론을 강의하는 자) ④ 본직기관의 비상근 근로자, 타 대학 소속 전임교원·전임연구원 	<p>※ 인정 제외대상 교원 (기타 비전임교원으로 분류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초빙교원의 조건을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않은 교원 ② 타 대학 소속 전임교원·전임연구원